

코로나19에 사라지는 '작은 영화관'

전남지역 위탁 운영업체 '사회적협동조합' 경영난 폐업 정남진시네마 이어 곡성·화순·보성 영화관 문닫아 지자체, 재정 형편에 직영 어렵고 적자 불가피해 고민

'코로나19' 때문에 전남지역 작은영화관들이 줄줄이 폐쇄됐다. 위탁운영을 맡았던 법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면서 지역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했던 시골 영화관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21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장흥 정남진시네마가 지난달 30일 위탁 운영업체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 포기' 결정으로 폐쇄됐다.

정남진시네마는 지난 2014년 전남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어 5년 만인 지난해 관람객 30만명을 돌파했다. 5년 간 상영한 영화만 634편에 이른다. 장흥군 인구(6월 말 기준)가 3만 8071명에 65세 이상 인구가 1만2829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역민들의 '핫 플레이스'로 자리잡았지만 경영난을 버텨내지 못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오는 2021년 9월 말까지 3년 간 정남진시네마를 위탁기로 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을 포기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중순, 법인 파산으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운영 중단 및 영화관 재산 반납 결정'을 내리고 전 직원들에 대해서도 권고 사직 조치를 내렸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장흥 정남진시네마 뿐 아니라 곡성·화순·보성 작은영화관의 위탁 운영도 포기했다.

위탁 업체의 운영 포기로 곡성(2017년 12월·95석), 화순(2018년 2월·124석),

보성(2019년 4월·96석) 작은 영화관도 남아있는 위탁 기간과 상관없이 폐쇄됐다. 전국적으로도 해당 업체가 위탁을 맡았던 34개 영화관이 모두 문을 닫게 됐다. 곡성의 경우 지난 5월 작은영화관을 살리겠다고 곡성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람권(무기한권) 구입 운동을 펼치며 '영화관 폐쇄'를 막았지만 문을 닫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전남지역 7개 작은영화관 중 남아 있는 곳은 군이 직영을 하는 고흥과 지역업체

가 위탁해 운영중인 진도·완도 등 3곳이 전부다. 그나마 완도의 경우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 작은영화관의 경우 수십여년 만에 영화관이 생긴데다, 관람료도 대도시에 비해 저렴한 5000~8000원 수준이라 지역민들의 호응도 컸다.

적은 관람료에도 수익금의 30%를 사군에 내고 10%를 사회에 환원하면서도 영화관 운영이 가능했지만 코로나 여파를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게 자치단체 설명이다.

지자체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위탁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열악한 재정 형편상 직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군이 직접 운

영하는 고흥도 매년 5억 7200만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민간 위탁업체 선정도 어렵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 운영비 보전이 필요한데 여의치 않아서다. 애초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맡았던 영화관의 경우 지역 재단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재단 설립에만 3~4개월 소요되면서 정상 운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은 한 재개관은 어려울 것"이라며 "코로나가 수그러들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던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달 말 운영위탁 중단을 통보하면서 폐관상태인 장흥 작은영화관인 '정남진시네마' 전경. <장흥군 제공>

조합장 당선 무효 잇따라... 조합 운영 파행 우려

법원, 영광 축협조합장 이어 나주배원에농협 선거 무효 판결 영광축협 8월 13일 재선거...전남 2개 조합도 '무효 소송' 제기

영광 축협조합장 선거가 다음달 13일 다시 치러진다. 법원이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들어 현 조합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한 데 이어 현 조합장이 항소하지 않고 재선거를 수용하면서다.

나주배 원예농업협동조합도 법원의 '조합장 선거는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선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 조합장 측이 항소할 경우 자칫 항소심 판결까지 현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000명 가까운 조합 운영의 파행도 우려된다. 전남지역에

서는 지난해 치러진 조합장 선거 관련,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된 곳이 여럿 있다는 점에서 재선거로 인한 후유증과 혼란도 커질 전망이다.

21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무자격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 문제로 '축협조합장 당선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은데 따라 오는 8월 13일 영광 축협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낙선자측인 영광 축협 조합원 A씨가 "무자격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제기한 '조합장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현 조합장측이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영광축협의 경우 지난해 3월 13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현 B 조합장이 522표, 전 조합장인 C 후보가 414표를 얻어 108표 차로 B 조합장이 당선됐지만 무자격자 투표 논란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거쳐 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주배 원예농업협동조합 사정도 비슷하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

호)는 나주배 원예농협 조합원 등이 제기한 '조합장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53명이 선거에 참여, 농협법을 위반했다"면서 "당선자와 상대 후보간 득표차가 25표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무자격 조합원들이 참여해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현 조합장측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항소심 판결까지 현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1900명이 넘는 조합 운영의 파행도 예고되고 있다.

이들 조합 외에도 전남지역에는 현재 2개 조합에서 '조합장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결과에 따라 재선거 사태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노조 동의 없이 보수 규정 바뀌 지금않은 임금 교직원에 돌려줘야"

법원, 호대에 8500만원 지급 판결

호남대 법법인 성인학원이 노조 동의 없이 보수 규정을 바꾸면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교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노조 동의 없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없앤 것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대학 근로자들 동의를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 규정이 바뀐 만큼 당시 퇴직자들이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했다면 더 받아야 했을 비용 8500여만 원을 호남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부는 호남대 전 교직원 A씨 등 7명이 학교법인 성인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법인은 A씨 등에게 8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퇴직한 교직원들은 학교법인측이 지난 2014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보수 규정을 없애고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서 못 받게 된 봉급과 연가보상비 등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매년 달라진 공무원 봉급표를 반영했다면 더 받아야 했을 임금 등 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를 경우 민간 임금 수준, 표준생계비, 물가인상을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교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법원측의 보수 규정 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수 규정을 변경할 당시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 소송을 제기한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학교측이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다만, 명예퇴직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승낙하는 함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해지'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당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313억 배상해야"

법원, '사무장병원' 개설 상대 소송 건강보험공단 손 들어줘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3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이 지난 7년간 건강보험에서 쟁겨간 진료비 등이 313억원에 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A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은 A씨 등이 의료인이 아니에도, 의사를 영입해 봉직으로 근무하게 하고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13억3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쟁겼다며 관련 소송을 냈었다.

공단은 이들 중 4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반영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사무장 병원을 개설, 진료행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의무 없는 요양 급여비용을 지출토록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동업 기간·개설 명의인·의료생활 운영 기간·환수처분 금액 등을 감안, 해당 피고인별로 손해배상 범위를 8억9000여만원부터 최대 101억여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안서 SUV차량 농수로 추락 3명 숨져

새벽 귀가하던 SUV차량이 농수로 추락해 운전자 등 3명이 숨졌다.

21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신안군 지도읍 한 농수로에 SUV 차량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

(59), 동승자 B씨(59)와 C씨(여·58) 등 3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은 전날 밤 모임을 갖고 새벽 시간 귀가하던 중 커브길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홈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